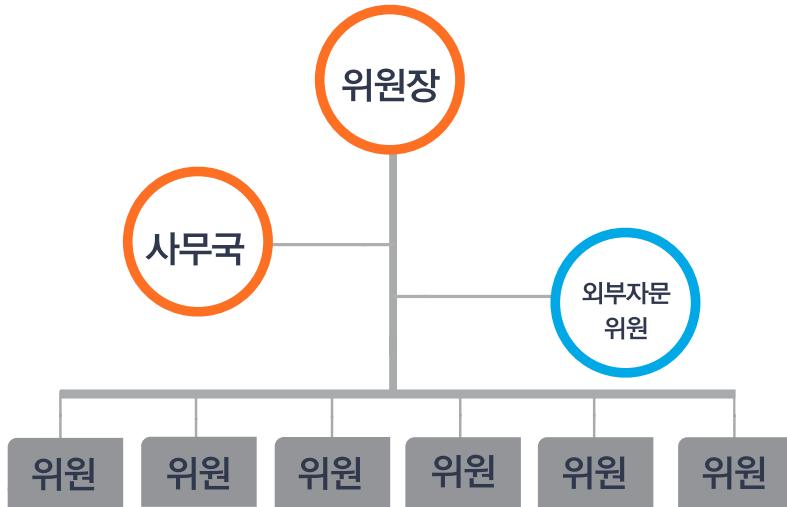


JW중외제약 분쟁조정협의회

step 01

분쟁조정협의회란?

JW중외제약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이해관계자외의 분쟁방지를 위해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법 및 약사법 등의 필수법규와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JW중외제약 내에 설치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step 02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

일반소비자

약사법, 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 관련 의약품의 용법·용량, 허위·과장 광고, 의약품 부작용, 건강기능식품 총판 업체와 일반소비자의 분쟁 등

보건의료전문가

약사법(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제13조의2)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및 공개와 관련한 사항

기타

JW중외제약과 이해관계자 간에 약사법(의료기기법) 및 공정거래법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협력업체 및 대리점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의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의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 ②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미제공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등
- ③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 수령거부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step 03

조정절차 (30일 이내 절차 종료)

조정신청

이해관계자 또는 분쟁과 관련된 임직원
(이해관계자 동의 전제)



사무국에서 접수 및 사안 정리
구두, 서면 등 의견 수합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서면 심의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사자
출석 요청

조정절차 종료

수락 or 수락 거부

조정안 작성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안 작성 후 당사자에
게 조정안 제시

step 04

신청방법

